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3년 6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가. 지방세법이 2013. 1. 1 일부개정됨에 따라, 상위법의 용어변경 되는 조항 등을 정비코자 함

나. 지방세법이 2013. 1. 1 일부개정됨에 따라, 상위법의 일괄부과기준 금액변경 되는 조항 등을 정비코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목 “(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)”를 “(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)”로 용어변경(안 제14조)

나. 제목 및 내용 “(과세특례)”를 “(재산세 도시지역분)”으로 용어변경(안 제15조)

다. 재산세(주택)분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원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변경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입법예고 (‘13. 05. 06 ~ 05. 26) : 의견없음

마. 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 (‘13. 05. 08) : 가결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: 검토결과 제외

사. 기 타 :

(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)”를 “(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)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과세특례)”를 “(재산세 도시지역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과세특례”를 “도시지역분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5만원”을 “10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) ①·② (생 략)	제14조(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제15조(과세특례)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.4로 한다.	제15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 ----------도시지역분----------.
제16조(납기)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한다.	제16조(납기) ---------- 10만원 ----------.